

July 22, 2026

2026년 6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6년 6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29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6. 6. 29. (7.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태양광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 에서 '4년 이내'로 완화	에너지
6. 26.	수도법 시행규칙	- 저수조청소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 '창고'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규정 -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기술인력 규제 재검토기한을 해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상수도 등의 관리 실태 보고의무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수질
6.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6. 6. 30.부터 탄화수소·질소산화물의 경우 0.100g/km 이하에서 0.044g/km 이하로 강화 -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냉간 시동 상태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 - '27. 1. 1. 이후 적용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과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규정 -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및 확인서의 서식을 개정되는 배출허용기준 등에 맞추어 정비	대기

6.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 -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 -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	공통
6.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실시	기타
6. 9. (12. 1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 -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 -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	폐기물
6. 9. (12.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 - 대발생 곤충의 조사와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포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	자연

6. 9.	수도법 시행령	-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을 추가 - 1일 처리규모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정수시설에 적용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세분화 - 일정 규모의 정수시설 중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배치기준을 완화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연면적 산정의 방법을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수질
6. 9. (12.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부 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 및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	수질
6. 9. (12. 10)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	대기
6.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100을 초과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민의 3/4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해당 연도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에너지
6. 24.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외부위원의 위촉기준, 자격요건, 비밀유지의무, 해촉요건 및 재검토 기한 등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선	화학 (국립환경과학원)
6. 23.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실적 인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 복원 지원센터로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추가 지정	자연

6. 2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지산지소형 분산특구 모델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유형에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유형을 신설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 지정 평가 시 재생에너지 활용 특구계획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에너지
6. 2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 부족전력도 송·배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 - 구역전기사업자인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에너지
6. 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관리폐기물로 규정 -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범위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OECD국에 수출하는 GC010, GC020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구체화	폐기물
6. 2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비용에 따르도록 정비	수질
6. 22.	(2026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 2026년도의 재활용비용 산정지수는 1로 하고, 멸균팩의 경우에는 1.5886로 고시	폐기물
6. 16.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외배관 보호설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외배관에 표시·표지를 하도록 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6. 11.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26년도 에너지바우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연탄 사용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	에너지
6. 10.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고시)	- 충북 제천 등 4개구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 제정	수질
6. 9.	(전기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와 전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위탁 수행 기관을 대한전기산업 연합회로 지정하여 고시 제정	에너지
6. 8.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 환경대기 중 아산화질소 자동측정법에 레이저흡수분광법을 신설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측정을 개정	대기 (국립환경과학원)
6. 8.	(빛공해공정시험기준)	-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 수행시 조도계, 점휘도계 및 면휘도계 교정내용을 추가하고, 분석영역 계산 과정 중 관련 예시 및 참고문헌을 최신화	대기 (국립환경과학원)
6. 8.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PM-2.5) 자동측정방법-광대역분광법을 신설	대기 (국립환경과학원)

6.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을 정비 -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6. 1.	(전기분야 개인 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전기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정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5. 2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를 적용받는 시설의 불법배출 행위 및 잔류성오염물질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을 과징금 위반부과금액 산정 기준에 추가	공통
5. 27.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 선풍기, 의료건조기,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해 효율관리기자재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을 강화하고, 에어프라이어와 프린터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에 추가	에너지

2. 주요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36건)

예고 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내용	비고
'26. 6. 29. ~ 8. 1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 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추가 -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을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명확히 개정	대기
6. 24. ~ 8. 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각 계획별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핵심 요소를 고시 사항 세부 기준으로 신설 - 지자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기한과 절차를 명시	수질
6. 24. ~ 8.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원의 사업 수행 근거와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	수질

6. 22. ~ 8.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을 추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를 규정	폐기물
6. 22. ~ 8.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안전기준을 명시 - 폐기물매립시설 굴착 허용을 유연화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를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간 명확화 및 재활용기준 정비 및 확대 등 구체적 기준을 정비	폐기물
6. 19. ~ 7.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신설되는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화 -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등 국립기후 과학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규정 -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운영의 범위를 규정하고 연구 협력방안 등 협의 사항과 분야별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을 구체화 - 임업, 산림분야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	기후
6. 18. ~ 7. 2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환경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요청의 근거를 마련	화학
6. 12. ~ 7. 2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어,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및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등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	에너지
6. 12. ~ 7. 2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어, 수소에너지·수소에너지설비 등 정의와 수소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	에너지

6. 10. ~ 7. 2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무허가 토지 출입 등에 대한 행정형벌(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행정질서벌(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되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	수질
6. 2. ~ 7. 1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해촉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결정 기준을 규정 -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을 개정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부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 -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100 분의 45 를 별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를 마련	화학
6. 2. ~ 7. 1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를 규정 - 손해배상금 신청서 서식과 재심의 신청서 및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정 -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 제출과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 -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화학
5. 29. ~ 7. 8.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가능하도록 규정 -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에너지

5. 29. ~ 7. 8.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 - 신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를 삭제 -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 사유 중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를 삭제	에너지
6. 26. ~ 7. 1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멀티에어컨디셔너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변경하고, 인증기준을 개정	기타
6. 24. ~ 7. 14.	(자료보호 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 대상·범위가 확대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를 신설 - 정보공개 유예 근거를 마련 - 자료보호 요청 시 제출자료 및 사유 등 영업비밀 판단자료 작성방법을 명시	화학
6. 22. ~ 7. 12.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3년 유예	폐기물
6. 19. ~ 7. 10.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을 신설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를 마련 -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을 추가	폐기물
6. 19. ~ 7.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방식을 자금 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 차입 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 -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정의 신설 및 태양광 사업 용자기간을 신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취급기관 확대 및 재대여 방식을 도입	에너지
6. 16. ~ 7. 7.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 위원회 참여기관의 공식 명칭을 반영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무국 업무 지휘권자를 정부위원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변경	수질
6. 16. ~ 6. 26.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	화학

6. 16. ~ 7. 6.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회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 침출수 회석처리 인정절차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대체복토재의 종류(인공복토재, 복토용 덮개)와 세부기준 및 복토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	폐기물
6. 15. ~ 7. 6.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재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	폐기물
6.15. ~ 6. 25.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 변경 수립)	- 물재이용법 개정, 가뭄심화 등 최근의 물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 2 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물 재난 대비 물 재이용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수질
6. 12. ~ 7.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38 종을 신설하고, 화학물질명칭 및 유해성분류 등 9 종 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6. 12. ~ 7.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38 종을 신설 -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된 6 종의 인체등유해성물질 명칭을 추가 및 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6. 11. ~ 7. 2.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 '30 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국토 면적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 중 보호지역 정보망에 정보를 연계관리할 보호지역의 목록을 고시	자연
6. 11. ~ 6. 22.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향후 10 년간(2026-2035) 4 대 유역, 17 개 시도 하구연안 대상으로 국가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후위기·사회변화 대응, 물환경 보전, 하수도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 및 하수도 재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제 3 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	수질
6. 10. ~ 6. 30.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 2026 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연, 일반수소발전 930GWh/연으로 설정하고, 2027 년 이후의 개설 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추가적으로 설정하며, 2026 년 개설물량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은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거래량 비율로 배분	에너지
6. 10. ~ 6. 22.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과불화화합물 관리 고도화를 위해 시험방법을 추가·개선하고, 정량한계를 강화	수질

6. 9. ~ 6. 29.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대규모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사전 전기 공급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평가항목 및 방법과 이행의무사항 점검 등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6. 8. ~ 6. 27.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의 인증기준 부담을 완화하고, 최신 국제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하여 11 개 환경표지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정	기타
6. 8. ~ 6. 29.	(환경신기술인증·기 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환경신기술인증 평가기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권자로 규정 - 기술원장이 실시한 사후평가의 기후부 제출일을 5 월말로 현행화하고, 신기술인증 이후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분야 R&D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점을 지급	기타
6. 4. ~ 6. 15.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적용 방법을 ①국내 → ②국외(공인기관 제공 계수 사용) → ③실측(신설) → ④이론 순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 납 2 차 제련의 용융·용해시설, 화장로시설의 화장시설, 도정 및 제분시설의 미곡 도정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를 신설	대기 (국립환경 과학원)
6. 4. ~ 6. 1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 출입관리 폐기물 품목에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을 추가하고,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범위를 구체화	폐기물
6. 2. ~ 6. 23.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의 목적 등 인용 법령·조문을 정비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 3 장의 2(표시·광고 내용의 실증)'를 신설 -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 제출기간, 작성원칙 및 실증방법별 세부 작성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	기타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26. 5. 28. (임종득의원 등 11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국가 및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에너지

II. 기후부 출범 1년 주요 성과 발표 내용 정리

1. 기후부 주요 성과 발표

-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6. 4.)
 - 환경부는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부 출범('25. 10. 1.)
 -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
 -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추진
- 지난 1년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탄소중립 이행의 청사진을 제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
 - 전통 주력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2. 기후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1)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의 기틀 마련

- 국민과 함께 완성한 탄소중립 청사진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최종 확정('25. 11. 11.)
-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
-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배출허용총량은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확대('30. 50%)
- '2050 탄소중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 기후시민회의 출범 및 '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 2.9조원 확대

● **재생에너지·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구체화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 공급 의무 이행방식을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 햇빛소득마을 확산 본격화를 위한 추진단 출범
-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 보장 법령이 국회 상임위 통과
- 육상풍력 부문은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25. 12.)
-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
-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결정(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출범('25. 9.)

●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본격화**

- **1 분기 태양광 보급 35.5% 증가(전년 동기)하며, 한낮 발전 비중 50% 돌파**
-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로 안정적인 계통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
- 생산·소비의 지역 단위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 발표
-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입찰물량** 68MW('25. 1/4 분기) → **1,196MW**('26. 1/4 분기)
- 해안 변전소에 여러 단지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 마련
-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 추진(~'30)

2)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전기국가로 떠받치는 산업생태계 조성**
 - 전기차는 '25 년 약 22.1 만대 보급, '26.5 월 15 만대 보급 달성
 - '26 년 가스 난방 전기화 원년 선언, 히트펌프 보급사업 본격 추진
 - 배터리 부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 및 제조업 기반 확립
- **지역 에너지 거점 기반으로 전력 신산업 육성**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제주 녹색문명섬 프로젝트' 추진 중
 - VPP, V2G, ESS, P2H 등 분산형 에너지 신기술 적용·검증
 - 재생에너지 집적지역에 에너지 기술혁신·창업 산업단지(클러스터) 구축
 -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 실시간 최적 관리하는 '한국형 크라켄' 개발·실증 계획(26 개 기관)
- **순환경제로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발표(4 월), 폐자원을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 전환 이정표 제시
 - PET 병 생수·음료 다량 생산자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 부여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택배 과대포장 규제 본격 시행

3)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 평균 홍수 방어시설 설계 상한기준 200 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
 - 장마 시작 전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전수점검·청소 완료 예정
 - 신규댐 14 곳 중 필요성 낮은 7 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추진 중단
 - 기존 댐·저수지 개선으로 홍수조절용 물그릇 10 억 4 천만 톤 추가 확보
 - 기후 안전망 구축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대응대책('26~'30) 수립('25. 12.)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깨끗한 공기**
 - 조류경보는 낙동강 본류 등 주요 지점(7 개소) 당일 발령체계 전환
 - 녹조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녹조 집중시 낙동강 보를 순차 개방
 - 공기 중 녹조독소 민·관 공동조사 실시, 조사대상과 범위 확대 예정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 동남권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
-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각종 방제조치 등 **대응체계** 제도적 기반 완비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행비용** 현실화 및 대행업체 **선정기준** 개선
- 제 3 의 기관이 대행업체 선정하는 '**공탁제**' 시범사업 추진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제도화와 촘촘한 화학 안전망 구축**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 규정, 국가 책임과 피해자 지원 근거 법에 명시
- 제 2 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6~'30) 수립
- 생활화학제품 등 **위반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공소시효 연장**

4)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

- 석유 다소비 사업장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등 **에너지 절약** 추진
- 요소수 분야는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 단계별 조치 시행
- 나프타 수급난으로 **종량제봉투**는 138 억원 투입, **제작 설비** 등 대응

5)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1 년 : 분산의 한계를 넘어 시너지의 성과로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시 감축 시나리오와 에너지 전환 경로가 상호 정합하는 정밀한 목표 도출
- 제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 초기단계부터 기후·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통합 검토
- 해상풍력 보급사업은 '**계획입지**' 제도로 신속한 해상풍력 보급
- 수열에너지 활용 도심 냉·난방에너지 소비 절감, 수계기금 활용 재생에너지 확산 및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정책 자원 교차 활용
- 기후부 출범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

3.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 재생에너지'30년 100GW 보급,'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

-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10 개 이상 GW 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 발굴
-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30 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44.2GW)

- 일정규모 이상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역 내 최적화 분산형 전력망 전환
 -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 등 통합 지원, 마을 에너지 전환 확산

2) 원전수준의 경제적인 태양광 실현

- 계약단가 태양광 80 원, 육상풍력 120 원, 해상풍력 150 원 이하 실현('35)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
 -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
-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
 -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 추진
 -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

3) 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10GW/년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 3GW/년 이상 확대('30)
 -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 국내 산업 공급망 복원
 -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
- 기술·제품 선점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공략 확대
 -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 달성
 -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

4) 소득공유 전국 확산, 1 천만명 재생에너지 소득 구현

-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 전국 확산, 재생에너지 대전환
 -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 자가용 설비에 추가적 수익 제공
 - 200 만 가구(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 확대
-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 관리 대전환
 -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5) 재생 e 거버넌스 확대, 전문아의 재생 e 대전환 실현

- 일부 부처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
-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사업 우대

III. 기후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6. 7. 1	서기관 고나단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장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6. 23.	과학기술서기관 김태훈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관실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기대정	녹색전환정책관관실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과학기술서기관 정지민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6. 19.	서기관 문정호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명예퇴직
6. 9.	고위공무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물환경정책관실 물이용정책관
6. 5.	고위공무원 김지영	물환경정책관실 물이용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실 국제협력관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구도형

변호사

T 02.3404.0857

E dohyung.koo@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